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422호 제출년월일 2024. 2. 23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반려동물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.
-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, 놀이터(쉼터)를 설치하여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김포시 동물복지 거점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과 시민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반려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라.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(안 제6조)
- 마.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· 운영(안 제7조 ~ 안 제16조)
- 바. 반려동물 놀이터(쉼터) 설치 · 운영(안 제17조)
- 사. 협력체계 구축(안 제18조)

4. 검토의견

- ②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-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시 소요 예산(안), 수혜 대상자 규모, 지원 범위 및 기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사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7조 제3항의 진료비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때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, 규칙이나 훈령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할 수 없음. 다만, 주변의 여건 변화 등 신속히 수수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위임 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제12조에서 진료범위에 따른 진료비 산정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,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대상자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 진료비 금액 세부 기준을 규칙 등으로 위임 규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.